

의안 번호	2413	[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5. 2.(금) 강혜순 의원 외 7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5. 19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강혜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장과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3조)
  - 안 제7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대여사업자 책무 삭제
- 이용자 준수사항 개정(안 제6조)
  - ‘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’ 사항 추가
-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(안 제7조)
- 무단방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 ~ 제9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조의2, 제32조~제34조
- 「도로교통법」 제74조
-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km 미만,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함.
-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및 무단방치에 따른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
※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보유현황

2022년 3,680대 / 2023년 6,285대 / 2024년 6,500대

-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의와 안전까지 확보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 및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함.
-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준수사항 일부 추가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,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변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도로교통법」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(중략)

19의2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**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33조(주차금지의 장소)**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**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·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.

## 「도로법」

**제74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**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반복적,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
2.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

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,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「교통안전법」

**제3조(국가 등의 의무)**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·교육·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.